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
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(대표발의: 이한동 의원)

의안 번호	24-96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4. 8. .

발의자 : 이한동, 강동오, 고병준, 권인순,
이상원, 차해영, 채우진, 홍지광

1. 폐지이유

2024년 현재, 마포구는 2018년 12월부터 구성·운영되었던 5개 시범동 주민자치회를 폐지하고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16개 전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

3.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4. 8. 7. ~ 8. 14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8. 8., 2024. 1. 9.>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
차.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